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10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김동아 · 박민규 · 곽상언
김승원 · 장종태 · 허성무
박지혜 · 박지원 · 권향엽
이기현 · 이주희 · 문대림
정춘생 · 황명선 · 임오경
김준혁 · 박균택 · 최혁진
윤건영 · 박홍근 · 김남근
이병진 · 이재관 · 이광희
송재봉 · 안도걸 · 민형배
김문수 · 김원이 · 이재강
김현정 의원(31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일상 생활 영역에 확산되며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지원이나 혜택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의 부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

반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제도의 수립, 정비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를 둠(안 제8조).
-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컨설팅, 기술, 비용, 교육 및 각종 훈련 프로그램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9조).

차. 지역별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 인공지능 확산허브 등 지역 내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안 제31조).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5. “인공지능 중소기업”이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7. “합성데이터”란 컴퓨터 프로그램과 알고리즘 등을 통하여 실제 데이터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 및 정비, 규제 및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보급, 시설투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연구 성과 관리·확산 및 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데이터 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9. 지역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적용 및 보급 현황,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중소기업 인공지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의 확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예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자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권고에 관한 사항
 5. 제24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 및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기반조성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닌 자는 전담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공지능 인식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활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발굴, 포상 및 홍보
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공로가 큰 공공기관, 관련 단체와 그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3.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중소기업 및 전담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한 국내외 행사 및 축제 등의 기획 및 추진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자금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

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인력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 제10조 및 제35조의5 각 호의 사업을 인공지능 중소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도입 및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0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지원

제1절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공급

제14조(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2. 인공지능 제품 및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비용 지원
3. 인공지능기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특화 인공지능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및 기업 경영의 각 분야(이하 “분야등”이라고 한다)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등에 특화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중소기업(이하 “특화 인공지능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거나 육성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야등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응용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지원
2. 분야등의 인공지능기술과 관련 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 공급과 수요연계 지원
3. 특화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4. 분야등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표준화 지원
5. 공공과 민간 협업을 통한 데이터 공유 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분야등 인공지능 융합인력 양성 및 실무 교육,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등 지원
7. 그 밖에 특화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및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해외시장 진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 기업 또는 해외 기관과 협력모델 개발 등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공동기술 개발
 2. 해외 공동시장 개척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인공지능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 및 유치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인공지능기술 공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또는 시스템의 구조·설계에 대한 정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 정보를 공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사업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활용 지원
2. 소상공인 인공지능 제품 및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 및 인프라 지원
3.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제19조(데이터 확보 및 품질향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및 산업 간 데이터의 결합과 합성데이터의 생성·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시스템의 효과적인 훈련과 학습을 위한 데이터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의 암호화 방법 등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데이터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 현장 노하우 및 작업지식 등(이하 “숙련기술등”이라 한다)의 데이터화를 통한 숙련기술 등의 보존과 전승,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숙련기술등의 수집, 데이터화 및 구조화 지원
2. 데이터화된 숙련기술등의 인공지능 기반 분석, 학습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지원
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숙련기술등의 효율적인 전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작업 지능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등의 데이터화 및 인공지능 기반의 보존과 전승, 고도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데이터의 개방 촉진) ①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훈련 및 학습 목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

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신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거부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술적, 법률적 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중소기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데이터 관련 특례) ①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학습에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1. 해당 데이터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
2.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결과물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학습과

정의 조치를 취할 것

3.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에 관한 요약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
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개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복제 전송하는 중소기업은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복제물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 및 그 밖에
다른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
조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
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기술적 지원, 교육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3절 인공지능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제23조(고영향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에 대
한 지원,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규제개선 지원 등) ① 중소기업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 개선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

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규제배심원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또는 활용에 관련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하 “규제배심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규제배심원단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또는 활용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철회나 개선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제배심원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규제배심원단의 구성원이거나 규제배심원단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개선 권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규제배심원단의 요청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권고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의 조성

제28조(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 및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연계 지원
3.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컴퓨팅, 인프라 공동 활용, 테스트 환경 제공 등을 지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지역 특화산업 융합 및 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 특화 산업과 인공지능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산업에 적합한 인공지능 융합 모델 발굴 및 개발
2. 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지역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생산 또는 마케팅 지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여 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지역별 인공지능 확산허브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이하 “인공지능 확산허브”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확산허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3.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중소기업 인공지능 데이터의 생성 및 합성, 공유 및 거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6.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인공지능 확산허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과 인공지능 확산허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확산허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확산허브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인공지능 확산허브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확산허브에 입주하여 인공지능 산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하여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인공지능 확산허브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실증시설 등 연구시설·장비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확산허브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3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1조의 공공데이터의 개방 촉진 등 이 법에 따른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

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중소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인공지능 확산허브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전담기관의 임직원
2. 규제배심원단의 구성원
3. 인공지능 확산허브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36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담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